

Building on Principles

미래에셋 우리아이 3억만들기 주식형 투자신탁 G1호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 미래에셋 우리아이 3억만들기 주식형 투자신탁 G1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거하여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 코리아 3억만들기 주식형 투자신탁 G1호

1. 투자신탁명 미래에셋 코리아 3억만들기 주식형 투자신탁 G1호

2. 자산운용회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
사 명

| | | | | |
|---------------------------------|-------------------|----------------|----------|----------------|
| 3.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전 화 번 호 | 중소기업은행 | ☎ 729-6344 | 신한은행 | ☎ 756-0505 |
| | 외환은행 | ☎ 753-9281 | 부산은행 | ☎ 051-642-3300 |
| | 수협은행 | ☎ 1588-1515 | SK증권 | ☎ 3773-8245 |
| | 미래에셋증권 | ☎ 3774-1700 | 교보증권 | ☎ 3771-9000 |
| | 메리츠증권 | ☎ 785-6611 | 광주은행 | ☎ 062-239-5000 |
| | 동부증권 | ☎ 369-3000 | 서울증권(주) | ☎ 368-6114 |
| | HMC투자증권 | ☎ 1588-6655 | 미래에셋생명보험 | ☎ 1588-0220 |
| | 농협중앙회 | ☎ 397-5114 | 한양증권(주) | ☎ 3770-5000 |
| | 한국스탠다드차타 드제일은행 | ☎ 02-3702-3114 | NH 투자증권 | ☎ 2004-4111 |
| | 하이투자증권 | ☎ 1588-7171 | 하나대투증권 | ☎ 1588-3111 |
| | 제주은행 | ☎ 1588-0079 | 한국투자증권 | ☎ 1588-5000 |
| | 전북은행 | ☎ 063-250-7114 | 브릿지증권 | ☎ 771-0900 |
| | 대한생명 | ☎ 1588-6363 | 대구은행 | ☎ 053-756-2001 |
| | 교보생명 | ☎ 1588-1001 | 한화증권 | ☎ 02-3772-7000 |
| | 하나은행 | ☎ 1588-1111 | 경남은행 | ☎ 055-290-8000 |
| | 산업은행 | ☎ 02-787-4000 | 대신증권 | ☎ 769-2000 |
| | 현대증권 | ☎ 768-0114 | 우리투자증권 | ☎ 02-768-7000 |
| | 금호생명 | ☎ 02-6303-5000 | IBK투자증권 | ☎ 02-6915-5000 |
| | 굿모닝신한증권 | ☎ 02-3772-1000 | | |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 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성기준일 2008 년 12 월 15 일

5. 투자설명서 판매회사, 자산운용회사,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
비 치
· 공 시 및 http://www.miraeasset.co.kr , http://www.amak.or.kr
인 터 넷
게 시 주 소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 1 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등의 분배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 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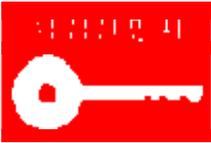
제 4 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의 뜻에 대해 알고 싶다면?

[참고] 펀드용어정리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펀드용어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 6 쪽)

- 1. 명칭 미래에셋 우리아이 3억만들기 주식형 투자신탁 G1호
(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 : 48364)
- 2. 신탁계약기간 추가형이어서 별도의 종료일이 없습니다.
- 3. 종류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 4. 자산운용회사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
(해외위탁운용사에 관한 사항은 제3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투자정보(☞ 6~8 쪽)

| 구분 | 주요내용 |
|---------------------|--|
| 1. 투자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주식(60% 이상),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수익증권, 어음 등 유동성자산에분산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x 100% (비교지수는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www.miraeasset.co.kr)에서 확인가능) |
| 2. 주요투자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투자(Value Investment)를 원칙으로 모멘텀 투자 병행 - 섹터별 매니저를 통한 분업화로 Bottom-up 운용체제 구축 |
| 3. 주요투자위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음 - 따라서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 |
| 5. 기준가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 (www.miraeasset.co.kr)에서 확인 가능 |

6. 운용전문인력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간접투자기구수 | 운용자산규모 (억) | |
| 송진용 | 1975 | 과장 | 58 | 87,941 |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형1호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주식형1호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주식형1호 등 |

7.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과거성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연도 | 최근 1년 (07.07.27 ~ 08.07.27) | 최근 2년 (06.07.27 ~ 08.07.27) | 최근 3년 (05.07.27~ 08.07.27)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05.04.01~ 08.07.27) |
|-------|--------------------------------|--------------------------------|-------------------------------|-------|--------------------------------|
| 투자신탁 | -7.47% | 16.67% | 21.38% | | 23.55% |
| 비교지수* | -15.15% | 11.03% | 13.49% | | 16.35% |

※ 비교지수 = KOSPI X 100%

III 매입 관련정보(☞ 10~12 쪽)

1. 수수료 및 보수

| 구 분 | | 지급비율 | |
|----------------------------------|--------------------|-------------------------|---------|
| 수익증권 판매 기준 | | 제한 없음 | |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¹⁾ | 선취 판매수수료 | - | |
| | 환매수수료 |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 |
|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비용 ²⁾ | 보수 | 자산운용회사 | 연 0.60% |
| | | 판매회사 | 연 1.40% |
| | | 수탁회사 | 연 0.04% |
| | | 일반사무관리 | 연 0.03% |
| | 총보수 | 연 2.07% | |
| | 기타비용 ³⁾ | 연 0.59% | |
| 총보수·비용 | | 연 2.66% | |

주 1)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3)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거래비용이 포함된 추정치이며, 실제 부담하게 될 비용은 다를 수 있음.

2. 과세 수익자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8.10.01) 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 단 2009.12.31까지 가입한 3년 이상 장기적립식 투자자는 3년간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 세부사항은 본문참조 요함.

3. 매입·환매 절차 등

이 수익증권의 매입·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오전 시~오후 시) 에만 가능합니다.

| 구 분 | 오후 3시 이전 | 오후 3시 이후 |
|-----|--|--|
| 매입 |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 <p>-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p> |
| 환매 |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8 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p> | <p>-환매청구일(D)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제 8 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p> |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투자설명서 표지참조)을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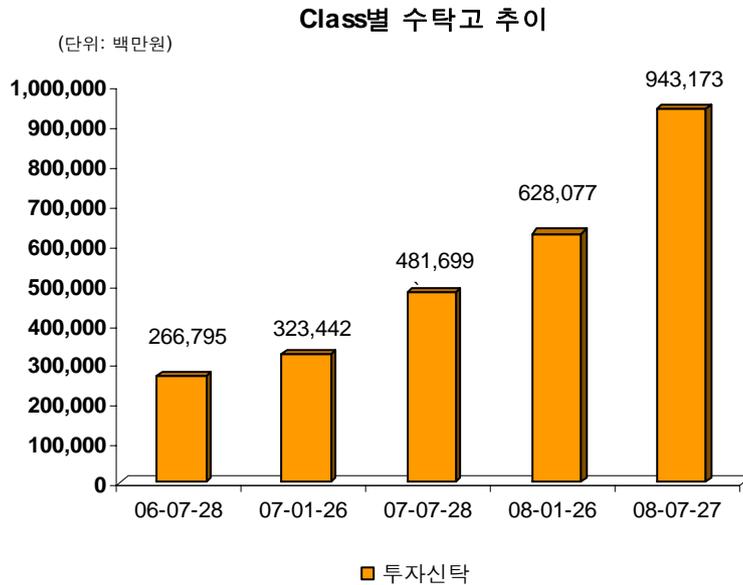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지위 및 성명) _____ (은) (고객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2008. .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 1. 명칭 미래에셋 우리아이 3억만들기 주식형 투자신탁 G1호 (펀드코드: 48364)
- 2. 신탁계약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이며 종료일이 따로 없습니다.
- 3. 분류 증권투자신탁,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 4. 자산운용회사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
 해외위탁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미래에셋자산운용(영국)
 미래에셋자산운용(브라질)
- 5. 최초설정일등 연혁 2005.04.01 최초설정
- 6. 수탁고추이
 (단위 : 백만원)



-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③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수익증권등, 기업어음등, 유동성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주식형펀드로서 간접투자 자산의 60%이상 최대 100%까지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얻어지는 자본 이득을 통하여 비교 지수 대비 초과수익률을 추구합니다.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 x 100%

(비교지수는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 홈페이지(www.miraeasset.co.kr)에서 확인가능)

2. 주요투자전략

적립식 펀드의 특성상 장기적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가치투자 (Value Investment)를 원칙으로 하고 모멘텀 투자를 병행합니다

섹터별 매니저를 통한 분업화로 전문적인 Bottom-up 운용 체제를 구축합니다

해외자산의 투자 : 미래에셋 투자전략위원회에서 결정한 자산배분에 의해 투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환위험 관리전략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헷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시장 상황 및 해당통화의 펀더멘털을 고려하여 일부 환헷지전략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주요투자위험

(1) 주식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 등에 일부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국가들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국내 채권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국내채권등은 금리변동에 따라 동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3)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주식등은 투자대상 국가의 외화로 거래되거나 기축통화(미국달러, 유로화 등)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되는 해외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15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이 60% 이상~최대 100% 까지 (90%정도)투자하는 상장주식 등은 채권 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큼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 편입비중이 이 투자신탁 보다 낮은 혼합형투자신탁이나, 채권형투자신탁, MMF투자신탁 등에 비하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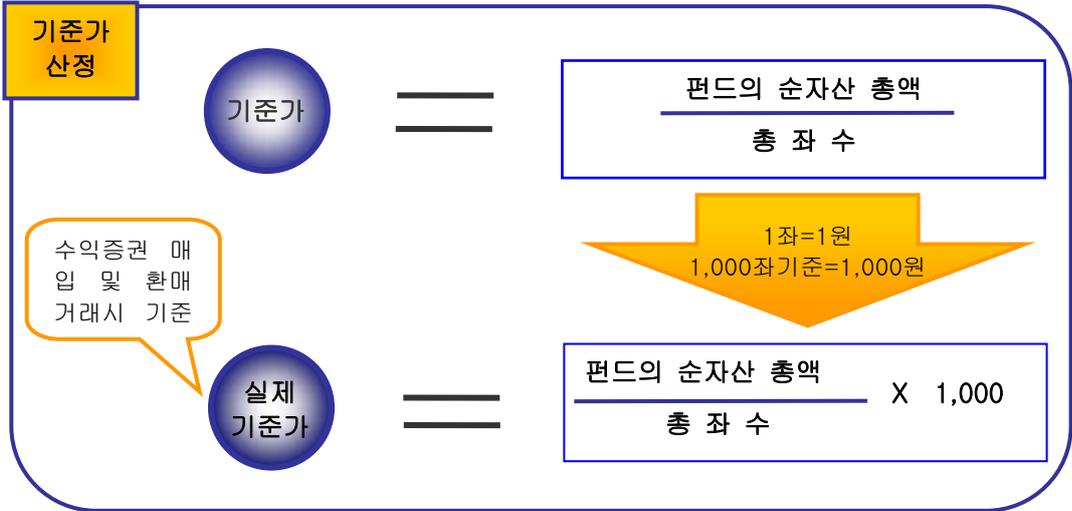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구분]

- 1등급 : 매우높음
- 2등급 : 높음
- 3등급 : 중간
- 4등급 : 낮음
- 5등급 : 매우낮음



| 위험등급 |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의 운용중인 투자신탁상품(예시) |
|------|----------------------------------|
| 1등급 |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주식형투자신탁3호 |
| 2등급 | 미래에셋 디스커버리 혼합형 투자신탁1호 |
| 3등급 | 미래에셋 인디펜던스한아름혼합형10 자투자신탁1호 |
| 4등급 | 미래에셋 솔로몬 국공채 투자신탁1호 |
| 5등급 | 미래에셋 FINE국공채신종MMF 투자신탁1호 |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 구분 | 내용 |
|---------------------|--|
| 산정방법 |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
|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산정주기 | 기준가격 은 매일 산정합니다. |
| 공시시기 | 산정된 기준가격 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
| 공시방법 및 장소 | 판매회사영업점, 운용회사(www.miraeasset.co.kr) · 판매회사(제3부 참조) ·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홈페이지 |

6.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간접투자 기구수 | 운용자산규모(억) | |
| 송진용 | 1975 | 과장 | 58 | 87,941 |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형1호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주식형1호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주식형1호 등 |
| 서재형 | 1965 | 본부장 | 15 | 29,919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식형투자신탁1호 미래에셋디스커버리주식형투자신탁G1호 미래에셋KOREA주식형모투자신탁 등 |

※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

7. 투자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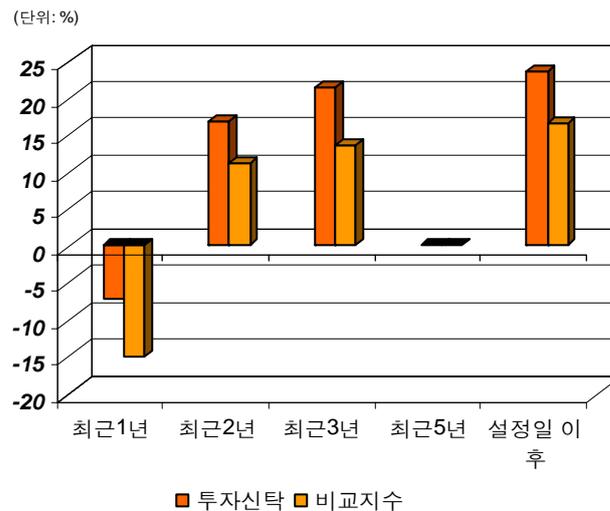
가. 연평균 수익률 :

| 구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설정일 이후 |
|------|------------------------|------------------------|------------------------|-------|------------------------|
| | 07-07-27 ~ 08-07-27 | 06-07-27 ~ 08-07-27 | 05-07-27 ~ 08-07-27 | | 05-04-01 ~ 08-07-27 |
| 투자신탁 | -7.47% | 16.67% | 21.38% | | 23.55% |

※ 비교지수: KOSPI X 100%

※ 설정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투자실적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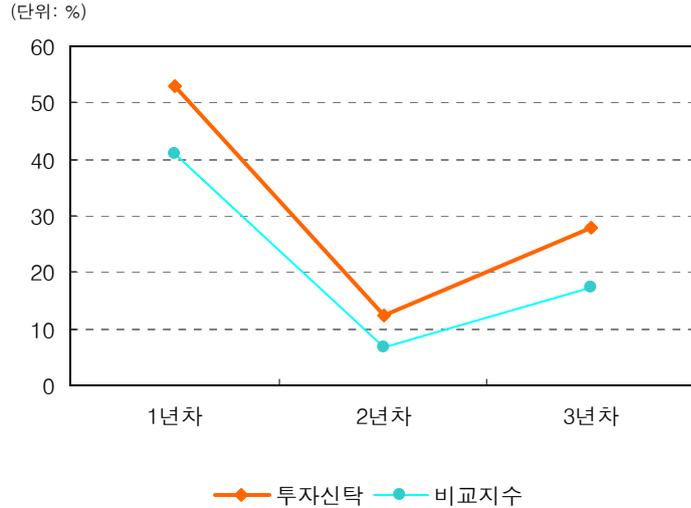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 구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 05-04-01 ~ 06-03-31 | 06-04-01 ~ 07-03-31 | 07-04-01 ~ 08-03-31 | | |
| 투자신탁 | 52.94% | 12.49% | 27.93% | - | - |

※ 비교지수: KOSPI X 100%

※ 설정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투자실적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연도별 수익률 추이



III. 수수료 · 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분 | 지급비율(연간,%) | 비고 (지급시기) | |
|--------------------------|------------|-------------------|------|
|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 되는 수수료 | 선취 판매수수료 | - | 매수시점 |
| | 환매수수료 |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 환매시 |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분 | 지급비율(연간,%) | 비고 (지급시기) | |
|------------------------|------------|-----------|-------------------|
|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비용 | 자산운용회사 보수 | 연 0.60% |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
| | 판매회사 보수 | 연 1.40% | |
| | 수탁회사 보수 | 연 0.04% | |
| | 일반사무관리 보수 | 연 0.03% | 사유발생시 |
| | 기타비용 | 연 0.59% | |
| 총보수·비용비율 | 연 2.66% | | |

* 기타비용은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설정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펀드의 경우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다른간접투자기구의 실적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단위:천원)>

| 구분 | 1년후 | 3년후 | 5년후 | 10년후 |
|----|-----|-----|-------|-------|
| 금액 | 273 | 860 | 1,507 | 3,429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과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 원천징수 세액은 법에서 정한 환급비율 내에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장기적립식 투자자 소득공제 및 세제혜택> - 2009.12.31 까지의 가입자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가입일



※ 상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우대는 2008년 10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 · 환매, 분배

1.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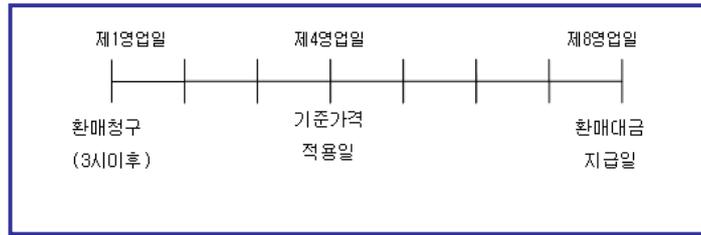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 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20쪽)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를 환매수수료로 부과합니다. 징구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 이익등의 분배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1. 투자전략

가. 개요

- 이 투자신탁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수익증권등, 기업어음등, 유동성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주식형펀드로서 주로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등에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해외주식 40%이하)
- 파생상품의 투자는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5%이하로 투자합니다.

나. 파생상품의 활용

- 자산운용회사는 보유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선물거래 등을 활용해 헷지거래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자산운용회사는 필요한 경우 보조적으로 자산가격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한 포지션을 시장에서 취하여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기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예측한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자산가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방향의 자산가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손실의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다. 주요투자전략

- 기본에 충실한 운용
- 철저하고 과학적인 종목분석으로 투자대상종목 Pool 구성
- 펀드매니저의 장세판단에 의한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Active 운용

2.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투자위험>

| 구 분 |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
|---------------|--|
| 주식가격 변동위험 | 이 투자신탁은 국내 및 해외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국가들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환율변동위험 | 해외투자 자산은 필연적으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 통화와의 환율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 위험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현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파생상품 투자위험 |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국가위험 | 투자하는 국가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
| 조기환매 위험 |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
| 환매연기 위험 |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에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의 '2. 환매관련 유의사항/(3)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3. 투자대상

* 투자비율은 신탁 재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 투자대상 | 투자한도 | 주요내용 |
|----------------|---------------|--|
| ① 국내주식 | 60%이상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에 한함),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공모주권, 증권거래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공모주권,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예탁증서 |
| (해외주식) | 40% 이하 |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
| ② 채권 (주식관련 사채) | 40%이하 (40%이하)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

| | | | |
|------|----------------------------|--|--|
| ③ | 자산유동화 증권 | 40%이하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 ④ | 어음 | 40%이하 |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 |
| ⑤ |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 (위탁증거금합계액) 15% 이하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장내 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 |
| | 해외장내파생상품 (해외장외파생상품)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장내 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
| ⑥ | 금리스왑거래 | 채권또는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 |
| ⑦ | 수익증권 | 5%이하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
| | (해외 수익증권) | 20%이하 |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 |
| | (상장지수 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 | (30%이하) |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 ⑧ | 투자증권대여 | 투자증권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의 대여 |
| ⑨ | 환매조건부 채권의매도 | 채권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이 보유한 채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
| ⑩ |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 |
| ⑪ | 금융기관 에의예치 | (만기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
| 기타사항 | | 법 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자산과의 거래 | |
| | | 약관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

| | |
|--|--|
| |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

4. 투자제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 제외 |
|------------|--|---|
| 동일종목 투자 | <p>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p> <p>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 금융기관(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규정 적용) 발행 채권 또는 채무증서, 금융기관보증 채권(증권거래법에 의한 공모채권에 한정) 또는 채무증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금융기관 지급보증 한 것에 한정) 및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별로 매일의 당해주식의 최종 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 <p>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시가총액비중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p> |
| | 동일회사 발행주식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 계열회사 발행주식 |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가액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할 수 있음. | |
| 이해관계인 단기대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
| 파생상품 투자 |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 |
| |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 |

| | |
|---------|--|
| 투자한도 초과 |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
| 후순위채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II.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 대상자산 | 평가방법 |
|-------------------------|--|
| ①상장주식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
| ②비상장주식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③장내파생상품 |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
| ③-①장외파생상품 |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
| ④상장채권 |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
| ⑤비상장채권 |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
|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 20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 ⑦간접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투자증권거래

- ※매매대가 이익이라 함은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
- ①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유가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2)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12~13쪽의 매입 관련 정보 참조)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 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 26 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

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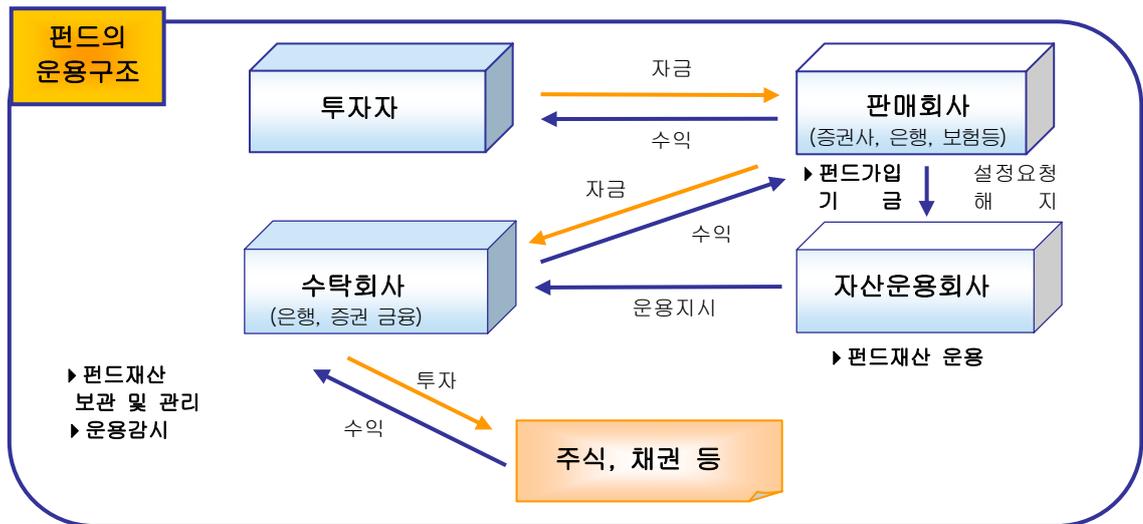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이익 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금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지체없이 상환금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 계약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 될 수 있습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이 관계인에 관한 사항



1.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
| 주 소 및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미래에셋빌딩(우.150-994) ☎ 02-3774-1600 |

2. 주요업무

자산운용회사는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자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 조사분석과 단순매매 주문업무 등을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 위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자산운용회사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시행일 현재 해외위탁계약이 체결된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미래에셋자산운용(영국)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미래에셋자산운용(브라질) (Mirae Asset Global Investimentos (Brasil) Gestão de Recursos Ltda.)

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탁 받은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 회사에 관한 사항>

1.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설립일: 2003년 12월 17일

회사주소: Suite 601, 6/F, One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1 Harbour View Street, Central, Hong Kong
전화번호:(852)2295-1500 팩스:(852)2295-0698

운용자산규모:

| | | | |
|---------|------------|------------|------------|
| 기준일 | 2006-12-31 | 2008-01-31 | 2008-09-30 |
| 순자산(억원) | 22,673 | 105,727 | 85,258 |

2. 미래에셋자산운용(영국)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 Management (UK) Limited)

설립일: 2007년 03월 21일

회사주소: 19th F1. 40 Bank Street, Canary Wharf, London E14 5DS

전화번호:(44)-20-7715-9900 팩스:(44)-20-7715-9901

운용자산규모:

| | | | |
|---------|------------|------------|---|
| 기준일 | 2007-11-25 | 2008-09-30 | - |
| 순자산(억원) | 41,061 | 16,778 | - |

3. 미래에셋자산운용(브라질)

(Mirae Asset Global Investimentos (Brasil) Gestão de Recursos Ltda.)

설립일: 2008년 04월 29일

회사주소: Av. Presidente Juscelino Kubitschek 1455, 12th floor, Conj. 122, Vila Nova Conceicao, Sao Paulo - SP Brasil 04543-011

전화번호: (55) 11-2608-8500 팩스: (55) 11-2608-8552

운용자산규모:

| | | |
|---------|------------|---|
| 기준일 | 2008-11-30 | - |
| 순자산(억원) | 0 | - |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자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기준가격계산에 대한 업무위탁>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국민은행**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를 수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자산운용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 및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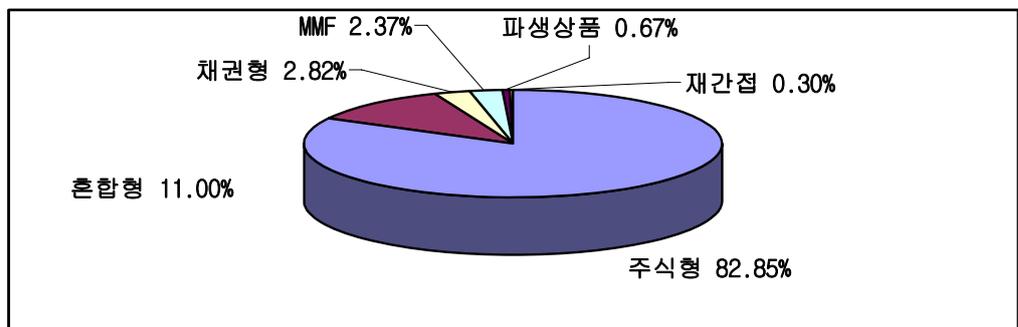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 억원)

| 요약 대차대조표 | | | 요약손익계산서 | | |
|-------------|--------------|--------------|----------------|------------|------------|
| 항목 | 2007.03.31 | 2008.03.31 | 항목 | 2007.03.31 | 2008.03.31 |
| 현금/예치금 | 1,130 | 1,932 | 영업수익 | 1,049 | 3,395 |
| 유가증권 | 186 | 642 | 영업비용 | 536 | 1,572 |
| 대출채권 | 19 | 19 | 영업이익 | 513 | 1,822 |
| 유형자산 | 346 | 353 | 영업외수익 | 39 | 73 |
| 기타자산 | 350 | 754 | 영업외비용 | 15 | 124 |
| 자산총계 | 2,030 | 3,699 | 법인세비용 차감전이익 | 538 | 1,771 |
| 예수부채 | 32 | 96 | 법인세비용 | 151 | 509 |
| 기타부채 | 330 | 800 | 당기순이익 | 387 | 1,261 |
| 부채총계 | 362 | 897 | | | |
| 자본금 | 391 | 453 | | | |
| 자본잉여금 | 391 | 329 | | | |
| 이익잉여금 | 890 | 1,995 | | | |
| 자본조정 | 0 | -11 | | | |
| 기타포괄손익 | -3 | 37 | | | |
| 자본총계 | 1,669 | 2,803 | | | |

4. 운용자산 규모 (2008.9.30 현재)

(단위 : 억원)

| 종류 | 주식형 | 혼합형 | 채권형 | MMF | 파생상품 | 부동산 | 특별자산 | 재간접 | 실물자산 | 총계 |
|-----|---------|--------|--------|--------|-------|-----|------|-------|------|---------|
| 수탁고 | 501,261 | 66,567 | 17,073 | 14,321 | 4,024 | - | - | 1,785 | - | 605,031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 운용중인 간접투자 기구수 | 운용자산규모(억) | |
| 송진용 | 1975 | 과장 | 58 | 87,941 |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형1호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주식형1호 미래에셋인디아디스크버리주식형1호 등 |
| 서재형 | 1965 | 본부장 | 15 | 29,919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식형투자신탁1호 미래에셋디스크버리주식형투자신탁G1호 미래에셋KOREA주식형모투자신탁 등 |

※ 신탁재산운용은 공동운용 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주소 및 연락처 |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
|-------------------|---|------------------------|
| 중소기업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 02-729-6344 | www.kiupbank.co.kr |
| 신한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20번 지 대경빌딩 신한은행본점 ☎02-756-0505 | www.chb.co.kr |
| 외환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 02-753-9281 | www.keb.co.kr |
| 부산은행 | 부산 동구 범일동 830-38 ☎ 051-642-3300 | www.pusanbank.co.kr |
| 수협은행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6 ☎ 02-1588-1515 | www.suhyp-bank.com |
| 미래에셋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 ☎02-3774-1700 | www.miraeasset.co.kr |
| SK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SK빌딩 ☎ 02-3773-8245 | www.sks.co.kr |
| 교보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 02-3771-9000 | www.iprovest.com |
| 메리츠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 02-785-6611 | www.meritzsec.com |
| 동부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 02-369-3000 | www.winnet.co.kr |
| 광주은행 | 광주 동구 대인동 7-12 ☎ 062-239-5000 | www.kjbank.com |
| HMC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 1588-6655 | www.hmcib.com |
| 유진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 02-368-6114 | www.eugenefn.com |
| 농협중앙회 |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 02-397-5114 | www.nonghyup.com |
| 미래에셋생명보험(주)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68번지 ☎ 02-1588-0220 | www.miraeassetlife.com |
|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 02-3702-3114 | www.kfb.co.kr |
| 한양증권(주)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1 ☎ 3770-5000 | www.hygood.co.kr |
| 하이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5 ☎ 1588-7171 | www.hi-ib.com |
| NH 투자증권(주) | 서울시 강남구 대치4동 891 ☎ 2004-4114 | www.nhis.co.kr |
| 제주은행 | 제주시 이도1동 1349번지 ☎1588-0079 | www.e-jejubank.com |
| (주)하나대투증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 1588-3111 | www.hanadaetoo.com |

| | | |
|------------|--|------------------------|
| 전북은행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063-250-7114 | www.jeonbukbank.co.kr |
| 한국투자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한국투자증권 ☎1588-5000 | www.truefriend.com |
| 대한생명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 www.korealife.com |
| 교보생명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1588-1001 | www.kyobo.co.kr |
| 브리지증권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98 ☎ 02-771-0900 | www.bridgefnc.com |
| (주)대구은행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번지 ☎ 053-756-2001 | www.daegubank.co.kr |
| 한화증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 02-3772-7000 | www.koreastock.co.kr |
| 하나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 1588-1111 | www.hanabank.com |
| 경남은행 |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46-1 ☎ 055-290-8000 | www.kyongnambank.co.kr |
| 산업은행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02-787-4000 | www.kdb.co.kr |
| 대신증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769-2000 | www.daishin.co.kr |
| 현대증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768-0114 | www.youfirst.co.kr |
| 우리투자증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우리투자증권빌딩 ☎ 02-768-7000 | www.wooriwm.com |
| 금호생명 |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57번지 ☎ 02-6303-5000 | www.kumholife.co.kr |
| IBK투자증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번지 63 빌딩 12층 ☎ 02-6915-5000 | www.ibks.com |
| 굿모닝신한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 3772-1000 | www.goodi.com |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수익증권 환매업무

수익증권 교부업무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

각종 장부·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제57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주)신한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20번지 ☎ 02-756-0505 |
|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 http://www.shinhan.com |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회 사 명 | (주)국민은행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02) 2073-7114 |
|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 http://www.kbstar.com |

2.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 | | | |
|----------------------|--|--|--|
| 회 사 명 | 한국채권평가 | 나이스채권평가 | KIS채권평가 |
| 주소 및 연락처 | 서울특별시중로구 세종로211번지 ☎ 02-399-335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번지 ☎ 02-398-39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6 ☎ 02-3215-1400 |
|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 www.koreabp.com | www.npricing.co.kr | www.bond.co.kr |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자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4부. 수익자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의 구성 및 권한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약관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장부 및 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신탁약관의 변경>

(1) 수시공시 등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miraeasset.co.kr),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http://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 용 어 | 내 용 |
|-------------|--|
| 개방형(간접투자기구) |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
| 금리스왑 |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 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
| 기준가격 |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 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 단위형(간접투자기구) |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
| 레버리지효과 |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
| 보수 |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 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선물환거래 |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
| 설정 |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
| 성과보수 |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수익자총회 |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u>의결권</u> 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수익증권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
| 수탁고 |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

| | |
|-------------|---|
| 신주인수권부사채 |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재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
| 원천징수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
|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 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 전환사채 |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
| 종류형(간접투자기구) | 일반적으로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
| 주식워런트 |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
| 주식형투자신탁 |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증권투자신탁 |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추가형 |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
| 파생상품투자신탁 | 간접투자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
| 판매수수료 |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
| 해지 |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
| 환매 |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 |
|---------|---|
| 환매수수료 |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
| 환매조건부채권 |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
| 환헤지 |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명칭 : 미래에셋 우리아이 3억만들기 주식형 투자신탁 G1호

판매일 : _____

투자자 확인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